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간 비교: 이민국가 레짐을 기초로*

최혜지**

요약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주제어: 이민정책, 이민자, 사회통합, 문화다양성, 다문화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주저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문제제기

한국사회의 다문화화는 단문화적 사회환경에 맞추어 조율되어 온 국내 사회정책 및 사회운용 체계에 질적,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주자가 곧 국민으로 치환되던 사회적 맥락에서 구상된 정책들은 거주자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가 분리됨에 따라 정책적 정합성이 도전받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누구에게 거주를 허용하고, 누구를 국민의 경계 내에 포섭 또는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주를 국가의 내적 욕구와 세계 경제질서가 반영된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국가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개방적인 시각(정무권, 1998)과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사회적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최경수, 2010)이 각을 이루고 있다.

국민이라는 사회문화적 경계에 대한 개방은 국민구성과 국가구조의 재편을 동반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국민의 경계를 허용하는 이민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성과, 사회적 통합의 질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 및 존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민을 국가형성의 근간으로 활용한 사례로부터 이민을 국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위협으로 경계하는 사례까지 국가마다 이민에 대한 정책적 선택은 다양하다.

이민을 국가형성의 토대로 삼은 국가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이민자 증가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우려하는 국가는 이민정책을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설계한다. 동시에 각국의 이민정책은 노동시장과 인력수급의 역동을 고려한 실용적 욕구와 난민수용 등 인도주의적 욕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이념적 토대와 방법론적 기제를 선택하든 이민정책은 국가의 통치이념과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Bauer et al. 2000).

대부분의 국가는 이민이 인구, 사회, 문화, 경제적 다양성을 높여 국가공동체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다. 이민정책은 사회통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을 사회통합이라는 거시목표 아래서 구상한다(최동주, 2009).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사회통합이 결정되며,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 이민정책을 수정하기도 한다. 즉 사회통합은 이민정책의 결과이자 이민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민자는 성공적 적응을 통해 이민수용국의 주류에 사회적으로 통합되기를 희망한다. 즉 국가와 이민자 모두에게 사회적 통합은 이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다(법제처, 2013). 따라서 각 국가의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족을 축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사회 또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어 왔다. 이에 조응해 다문화 사회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이주 또는 이민을 주제로 한 연구가 증가해 왔다. 이들 연구는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새로운 현상으로써 이민의 이해에 목적을 두거나(이혜경, 2008; 이규동, 2014; 설동훈, 2015), 외국사례를 통해 이민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했다(이규영·김경미, 2010; 이현아, 2013; 장진숙, 2010; Cerna, 2011; Hatton & Wheatley, 1999). 이들 연구는 각국의 이민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을 통해 이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이민정책 분석에 집중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이들 연구는 각 국가의 이민정책의 강점 또는 단점을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여 증거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민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하나는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이민정책의 목표에 근거해 각국의 이민정책을 객관적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는 분석대상 국가가 소수로 제한됨에 따라 각 국가의 이민정책을 전체 좌표 속에서 비교하는 지형적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민정책의 내용분석에 집중한 선행연구의 특성상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이민정책 분석에 집중한 선행연구는 다문화 경험이 성숙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민역사가 길고 문화적 분화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다문화 정도가 낮은 국가로부터 높은 국가까지 문화적 분화의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의 정도와 역사성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일부 국가에 집중해 고찰해 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다양한 국가들로 확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이 연구는 문화적 분화도가 다양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목표인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이민자의 사회통합

(1) 사회통합

독일정부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이민자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종교적, 정치적, 문화

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 인종 및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08, 이성순, 2011: 185 재인용). 우리정부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성순, 2011)들을 통칭한다. 이는 우리사회는 이민자의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된 상태를 이민자의 사회통합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독일정부의 개념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다룬 선행연구(고상두, 2012; 이현아, 2013)에 기초하면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두 가지 기준을 갖는다. 먼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라는 독일정부의 개념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확보된 상태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 이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이란 소득, 건강, 노동, 정치 등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각 영역별로 이민자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가와 관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이성순, 2011).

또한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불평등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독일정부의 정의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민자의 삶이 선주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은 인간으로서의 절대적 기준과 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에서 소득, 건강, 노동, 정치 등 다양한 삶의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이민자 사회통합의 경험적 근거

이민정책은 어떤 배경과 자격을 지닌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민정책이 누구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통제적으로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이민인구 구성과 이민자에 대한 자국민의 정서가 결정되며, 이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난민이나 망명 등 인도주의적 이민이 확대되면 이민수용국의 구성원은 범죄 등 사회적 혼란에 대한 염려로 이민자를 경계한다. 한편 이민정책이 노동력 수급을 중심으로 형성되면 이민자에 대한 자국민의 정서는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auer et al., 2000).

이민정책에 따른 이민인구의 구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노동시장의 요구를 강조한 이민정책이 실시되면 인적자본을 근거로 이민자가 선별되며,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민자의 구성비가 증가한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갖춘 이민자는 노동시장에 빠르게 통합되고 이민수용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한편 인도주의적 기준이 강조되면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한 저개발국 출신 이민자의 구성비가 증가한다. 이민자와 자국민

사이의 인적자원의 차이가 증가하고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Bauer et al., 2000).

Wright와 Maxim(1993)의 연구, Green과 Green(1995)의 연구는 point system을 축소하고 난민과 가족재결합 이민자의 비율을 확대한 1960년대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설명한다. Green과 Green(1995)은 이민자 집단의 경제활동을 고찰한 연구에서 point system을 거쳐 이민자격을 취득한 집단에 비해 가족결합 및 난민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민자 집단이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가족결합 이민과 난민제도의 확대, point system의 축소는 저개발국 이민자의 구성비를 높였으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한 저개발국 이민자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경제적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Wright & Maxim, 1993; Green & Green, 1995).

영국 이민자의 노동시장 및 경제적 통합을 다룬 연구에서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민자 집단의 구조적 변화는 경제적 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Chiswick, 1980; Bell, 1997). Chiswick(1980)의 연구에서 백인 이민자는 영국 자국민과 소득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유색인 이민자는 자국민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Bell(1997)은 Chiswick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했다. 영연방국 시민에게 부여했던 특별한 이민지위를 철폐한 1971년 이민법으로 인해 이민자 확대가 저개발국가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이 낮아진 것으로 설명한다(Shield & Price, 1998).

노르딕 국가의 노동시장 통합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적극적 모집 시기에 이주한 이민자는 성공적인 경제적 통합을 이룬 반면 1990년 이후의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통합을 보였다(Ekberg, 1994; Edin et al., 2000). 시기에 따른 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의 차이는 적극적 모집 시기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주를 이룬 반면 1990년 이후에는 동유럽 또는 비유럽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다수를 이루는 이민자 출신국의 변화를 통해 설명된다(Edin et al., 2000).

노르딕 국가출신의 스웨덴 이민자들은 임금수준이 스웨덴 자국민과 유사하고 10년의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 약 10% 정도의 임금격차를 보였다. 비OECD 국가출신의 이민자는 노르딕 국가출신의 이민자 보다 스웨덴 자국민과 높은 수준의 임금차이를 보였으며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금차이는 25%에서 35%에 달했다(Edin et al., 2000). 노르웨이 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을 살펴본 Hayfron(199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덴마크 연구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 이민자만을 위한 공공정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공공섹터를 통해 이민자 개인에게 재분배된 순자원은 이민자의 출신국과 덴마

크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densjo, 2000). 저개발국가 출신의 이민자는 인적자본이 취약해 경제적 통합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분배에 의한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1990년 이후 이민자에게 재분배된 순자원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저개발국가 출신 난민이나 가족재결합 이민에 비교적 관대한 덴마크 이민정책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Wadensjo, 2000).

이탈리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Venturini와 Villosio(2000)의 연구에서 이민자와 자국민의 임금 격차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이민자의 출신국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구에 의하면 임금격차의 63%가 피부색 등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이들 연구는 이민정책에 의한 이민 인구의 구성이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 및 이론적 근거들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이민자의 이민사유, 출신국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자의 출신국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인종, 교육수준을 비롯한 인적자본을 가늠하게 하는 간접지표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출신국 또는 인적자본을 이민자 선별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개방 또는 폐쇄적으로 적용하는가에 관한 정책이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민자의 인구구성에 대한 통제는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성과 이민자 선별 정책을 통해 결정된다. 인도주의적 이민 또는 국가경제를 우선에 둔 이민 등 이민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가에 따라 어떤 이민자에게 통제적일지 또는 개방적일지가 결정된다. 또한 특정 국가출신이나 특정 인종출신에 대한 선호와 거부를 담은 이민규정도 이민인구의 구성에 영향을 미쳐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결정한다.

2) 이민정책에 기초한 이민국가 레짐

Bauer et al.(2000)은 이민역사 및 이민정책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민국가 레짐을 구분했다. 다음은 이민국가 레짐별 특성을 기술하고 각 레짐의 대표국가 중 상대적으로 문화적 분화정도가 낮은 국가¹⁾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이민정책을 살펴보았다.

(1) 전통적 이민국 레짐

전통적 이민국은 이민이 국가형성과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룬 국가이다. 현재에도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주목적의 이민이 권장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국가별 선호도에 기초하던 이민자

1) 문화적 분화도가 낮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주는 함의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분화도가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별방식은 노동역량을 점수화해 이민자를 선정하는 Point system으로 전환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전통적 이민국에 해당한다. 호주 이민정책은 경제발전 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인도주의적 이민과의 균형으로 요약된다. 호주 이민정책은 1970년을 기점으로 변곡을 이룬다. 1970년대 이전 호주는 백호주의를 표방하며 백인중심으로 이민자를 유입 했다. 유색인종을 이민대상에서 배제하여 백인중심의 지배체제와 인종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사회 통합성을 높이고자 했다.

1970년 중반 이후 영국과의 관계변화, 아시아국가의 경제적 역량 증진을 배경으로 비유럽 국가로 부터의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민부 장관 그래스비의 '미래 를 위한 다문화 사회 연설'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백호주의를 폐기하고 다문화주의를 정책적 지향으 로 재설정했다. 이로 인해 출신국가 또는 인종에 기초한 이민자 선별이 완화되었다.

2010년 '큰 호주' 정책을 폐기하면서 196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개방적 이민정책의 기초가 규제 강화와 통제중심으로 변화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비롯한 인구정책은 교통과 주거수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적 전향이었다. 이와 같은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라 2010년부터 2011까지의 신규유입 이민자 수는 전년 대비 24%가 감소했다(OECD, 2011, 국가인권 위원회, 2011 재인용).

고숙련 전문인력 이민자가 영구이민자의 60%를 초과하며, 이는 호주 이민정책이 경제발전의 기 여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호주는 인도주의적 이민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인다. 난민 6000명을 포함한 1만 3000명을 매년 인도주의적 이민자로 수용한다. 인권침해 등 모국 에서 근본적 차별을 경험한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해 1981년부터 Global Special Humanitarian Program을 제공해 왔다. 이처럼 UN보다 진보된 난민정의를 채택하는 등 호주는 인도주의적 이민 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발전시켜왔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2) 후기식민지 혹은 적극적 모집국 레짐

후기식민지 혹은 적극적 모집국은 다섯 단계의 이민정책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민 1차 시기는 이 차대전 후 귀향 이민자와 식민지 출신 노동자 유입이 주를 이루었다. 이민 2차 시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이민자 유치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민 3차 시기는 오일 쇼크에 따른 사회적 긴장과 경제후퇴로 가족재결합 이민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난민,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와 터키내전에 따른 동유럽 난민의 증가가 이민 4차 시기를 대표한다.

이민 5차 시기에는 적극적인 난민제한 정책이 이루어졌다(Bauer et al. 2000). 후기식민지 레짐의 대표적 국가로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있다(Bauer et al. 2000).

영국의 이민정책은 경제사회적 기여가능성에 근거한 실용주의적 노선을 특징으로 한다. 이민자 선별과 관련된 영국의 이민정책은 주로 연방국가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Hatton & Price, 1999). 2차 대전 후 부족한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해 과거 식민국 국민에게 대규모 이민을 허용했다. 1948년 제정된 영국국적법에 따라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1962년까지 이민자 유입에 자유방임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온대원, 2010). 그러나 1962년 영연방이민법의 시행으로 영국국적법에 기초해 제재 없이 영국에 입국할 권리를 지녔던 신영연방국가의 이민자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1962년, 1968년, 1972년 세 차례에 거친 이민법 개정을 통해 저개발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억제하고, 파키스탄 등 신영연방국가의 유색인 이민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신영연방국가 이민자 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Keith, 2007; 최동주 재인용). 1980년 영국국적법을 통해 시민권을 영국시민권, 구식민국 국민의 재외시민권, 보호령시민권으로 세분화하여 이민을 통제하고 구식민지국가에 부여한 특혜를 종식시켰다(온대원, 2010). 1990년대 초반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과거 식민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대규모 이민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민자를 위한 복지급여의 삭감으로 1990년 중반 이후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Bauer et al. 2000).

2001년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은 경제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유인과 인도주의적 이민자의 통제로 요약된다. 고속련 이민자 프로그램,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프로그램 등 이민정책을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기초해 운용하고 있다. 2006년 유럽연합의 확대로 동유럽국 출신 이민자가 급증하자 영국정부는 ‘영국 국경의 강화(Securing the UK border)’ 등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을 가동했다. 동유럽출신 이민자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의 신규 가입국인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의 이민자 규모를 제한하고 취업가능 업종도 축소시켰다. 특히 2008년 개정된 Point system을 통해 이민자 규모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이민자의 꾸준한 유입과 유출, 경제적 발전,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관대한 복지정책을 특징으로 한다(Kahanec & Zimmermann, 2010). 이들 노르딕 국가는 사회정치적 구조, 사회적 가치 등 유럽복지국가와 유사성이 높으나(Kautto, 2001), 이민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유럽복지국가와 차이를 보인다(Mangset et al., 2008).

노르웨이의 이민정책은 경제이민의 선호와 인도주의적 이민의 존중을 특징으로 한다. 고속련 노동자와 전문가의 유입을 장려하는 적극적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SOPEMI, 1999), 이민규제

가 엄격해지는 동향을 보인다. 노르웨이 또한 point system을 도입하고 있으나 출신국가에 따라 이민자를 우대하거나 통제하는 선별정책은 없다. 2000년 이후 파키스탄,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베트남, 스리랑카, 터키 등 유럽연합 비회원국 출신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했다(설동훈·이병하, 2012).

2010년부터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가족이민규제가 엄격해졌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가족이 최저생활요건을 충족해야 가족이민이 가능해졌다. 난민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만을 수용하고 난민신청자는 일시체류만을 허용한다(설동훈·이병하, 2012). 난민이나 망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나 노르웨이 이민자의 3분의 1이 난민 또는 망명자이며 난민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민사유별 이민자 규모는 경제목적의 이민, 가족재결합을 위한 이민, 난민 또는 망명의 순으로 나타난다(설동훈·이병하, 2012).

덴마크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난민에게 관대한 이민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민족적 동질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였으나 1960년대 노동력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이민인구가 증가했다. 1983년 이민자유희화 정책을 계기로 이민자가 급증했으나, 이민자의 복지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결합해 이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이를 적절히 이용한 중도우파 정권의 등장으로 이민정책이 통제적으로 변화했으며, 2001년 이후 추진되어 온 이민제한정책으로 이민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덴마크는 이민인구 구성을 조절하기 위해 point system을 적용한 영주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oint는 이민자의 교육수준, 언어능력, 근로경험, 적응력, 나이에 따라 부여된다. 가족재결합을 목적으로 한 비자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생활여건 등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노동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을 중심으로 직업이 요구하는 훈련을 받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거주가 허가된다.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이민자가 증가세를 보이거나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의 구성비가 여전히 높다(강주현, 2011).

(3) 신이민국 레짐

신이민국 레짐은 북유럽국가가 적극적인 이민자 모집을 중단한 1970년대 이후 이민유입자가 이민유출자의 수를 앞질렀으며, 이민유입자의 다수가 북유럽국가로부터 역이민한 자국민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신이민국은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이 신이민국 레짐의 대표국가이다.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1971년 처음으로 이민유입인구가 이민

유출인구를 앞질렀다. 비아일랜드인에 의한 이민은 1990년대 말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민역사의 단기성으로 인해 이민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Bauer et al. 2000). 아일랜드 이민정책의 기초는 노동시장의 욕구에 기반 한 것으로 분석된다(Bauer et al. 2000).

아일랜드는 급격한 경제발전이 자국민의 역이민을 유도해 역이민자가 이민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다(Bauer et al. 2000). 비아일랜드계 이민자는 주로 영국, 인디아, 파키스탄 등 연영방국 출신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0년 이후 호주,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SOPEMI, 1999). 1990년대 후반 이민정책을 정비해 난민과 망명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한 국가비교 연구로 설계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는 ‘2012년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OECD 지표’,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의 2차 자료,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사회통합데이터’, Patsiurko et al.(2012)이 산출한 ‘국가별 민족적 분화지수 데이터’를 연구자가 통합해 구성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지표로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 Goodman의 Civic Integration Index 등이 존재한다.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는 21개 서구 국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민자의 사회통합 실태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Goodman의 Civic Integration Index는 가족재결합, 장기거주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이민정책 유형을 구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2012년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OECD 지표’,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의 2차 자료는 다양한 국가의 조사결과를 재구성한 복합지표로 Gallup world poll,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wiss household panel, 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Canada survey of income and labor dynamics, New Zealand household income survey, U.S. current population survey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Patsiurko와 동료들은 브리태니카 사전 연감에 기재된 국가별 민족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문화적 분화지수를 산출했다. 문화적 분화지수는 두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두 사람의 민족적 배경이 다를 확률을 의미한다. 문화적 분화지수는 0에서 1까지의 범주를 갖는다. 0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민족적 동질성이 완벽한 상태를, 1은 모든 구성원이 모두 다른 민족으로 이루어

저 민족적 이질성이 완벽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분석지표 및 측정방법

이 연구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이민자의 복지 상태를 통해 본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 접근하였다. 상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선주민과 이민자 사이의 격차로, 절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자의 복지 수준으로 조작화 했다. 또한 사회통합은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Parker(1996)의 논의에 근거해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경제·노동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상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나타내는 경제·노동의 격차는 이민자 가구의 중위소득 대 선주민 가구의 중위소득 비율, 이민자 가구의 빈곤율과 선주민 가구의 빈곤율 차이, 이민자 가구의 자가 보유율과 선주민 가구의 자가 보유율 차이, 이민자의 고용율과 선주민의 고용율 차이, 이민 고학력자 고용율과 선주민 고학력자 고용율의 차이로 지표화 했다. 사회적 격차는 이민자와 선주민의 건강한 성인 비율의 차이, 이민자와 선주민의 투표 참여율 차이, 이민자와 성소수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율로 지표화 했다.

절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나타내는 경제·노동차원의 복지는 이민자 가구의 중위소득, 이민자의 빈곤율, 이민자 가구의 자가 보유율, 이민자 고용율, 이민자 고학력자 고용율로 지표화 했다. 사회적 차원의 복지는 이민자의 건강한 성인 비율, 이민자의 투표 참여율, 이민자와 성소수자 등 소수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비율로 지표화 했다.

모든 지표의 값은 Z값으로 표준화 했으며, 각 차원별 지표의 Z값을 더한 총합을 각 차원의 대푯값으로 산출했다. 상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경제·노동의 격차와 사회적 격차 Z값을 총합해 생산했다. 총합이 낮을수록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격차가 낮고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기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또한 각 지표의 Z값을 총합해 산출했다. 총합이 높을수록 이민자의 복지수준이 높아 절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구체적 산출방식은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지표 및 측정방법²⁾

차원		지표	측정방법
상대적 기준의 통합	경제 노동의 격차	중위소득비율	선주민가구중위소득/이민자가구중위소득
		비빈곤율 차이	이민자가구 비빈곤율 - 선주민가구 비빈곤율
		자가보유율 차이	이민자가구 자가보유율 - 선주민가구 자가보유율
		고용율 차이	이민자 고용율 - 선주민 고용율
		고학력고용률 차이	15세-64세 이민자 중 대졸이상 학력자 고용율 - 15세-64세 선주민 중 대졸이상 학력자 고용율
	사회적 격차	경제노동격차의 총합	선주민 중위소득/이민자 중위소득의 Z값+빈곤율 차이 Z값+자가 보유율 Z값+고용율 차이 Z값+고학력자 고용율 차이 Z값
		건강성인 비율차이	이민자 건강한 성인비율 - 선주민 건강한 성인 비율
		투표참여율차이	이민자 투표참여율 - 선주민 투표참여율
		소수자 비관용도 ³⁾	100-이민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를 사회일원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사회격차의 총합	건강한 성인 비율 차이 Z값+선거 참여율 차이 Z값+소수자 비관용도 Z값
총합		경제노동격차 총합+ 사회적격차 총합	
절대적 기준의 통합	경제 노동의 복지	중위소득	이민자 가구 중위소득
		비빈곤율	100-이민자 가구 빈곤율
		자가보유율	이민자 가구 자가보유율
		고용율	15세-64세 이민자 중 고용된 자의 비율
		고학력 고용율	대학졸업이상 학력의 15세-64세 이민자중 고용된 자의 비율
	사회적 복지	경제노동의 복지 총합	중위소득 Z값+비빈곤율 Z값+자가보유율 Z값+고용율 Z값+고학력자 고용율Z값
		건강한 성인비율	성인 이민자 중 건강하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
		투표참여율	투표권이 있는 이민자 중 투표에 참여한 이민자의 비율
		소수자 관용도	이민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를 사회일원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사회적복지의 총합	건강한 성인비율 Z값+투표참여율 Z값+소수자 관용도 Z값
총합		경제노동의 복지 + 사회적 복지	

2) 모든 지표값은 원자료 포함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비빈곤율과 소수자 비관용도는 이들 자료에 포함된 빈곤율과 소수자 관용도를 이용해 연구자가 지표값을 산출했으며, 원자료를 가공한 이유는 지표값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3) 상대적 통합을 측정하는 지표는 모두 낮은 값이 높은 통합도를 보이는 긍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소수자의 관용은

(3)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분석대상은 OECD 가입국가 중 하나 이상의 지표에 데이터를 제공한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국가비교의 특성상 사례수가 제한되어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에 의존했다. 이들 국가의 사회통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사회통합 값을 교차한 산점도를 생산했다. 산점도에 사용된 모든 값은 Z값이므로 0은 분석에 이용된 전체 국가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표 2] 사회통합 차원별 산점도 산출방식 및 의미

사회통합	산점도 산출방식	
	X 축	Y 축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	사회적 격차의 총합	경제노동 격차의 총합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	사회적 차원의 복지 총합	경제노동의 복지 총합
경제노동 차원의 통합	경제노동의 복지 총합	경제노동 격차의 총합
사회적 차원의 통합	사회적 차원의 복지 총합	사회적 격차의 총합
전체적 사회통합	복지의 총합	격차의 총합
문화적 분화에 따른 상대적 통합	문화적 분화도	격차의 총합
문화적 분화에 따른 절대적 통합	문화적 분화도	복지의 총합

4.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분석

선주민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이민자가구의 중위소득 비율은 0.8로 나타났으며, 이민자가구의 빈곤율에서 선주민가구의 빈곤율을 뺀 차이는 평균 2.30%로 나타났다. 이민자가구와 선주민가구의 자가보유율의 차이는 평균 19.59%, 고용율의 차이는 평균 6.07%, 고학력자 고용율의 차이는 평균 7.81%로 나타났다. 건강한 성인의 비율은 평균 8.54%, 선거 참여율은 평균 18.61%의 차이를 보였다.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경제노동의 격차는 평균 0.37(z값), 사회적 지표의 차이는 평균 0.01(z값), 각 지표의 격차의 총합은 평균 0.22(z값)로 분석되었다.

높은 수준이 높은 통합도를 보이므로 다른 지표들과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소수자의 관용도를 가공한 소수자의 비관용도를 사용했다.

[표 3] 주요변수 기술분석

	변수	N	min	max	mean	sd
상대적 기준의 통합	중위소득 비율	27	0.7	1.0	0.80	0.08
	빈곤율 비율 차이	27	0.3	4.5	2.30	1.11
	자가 보유율 차이	28	1.0	42.9	19.59	13.63
	고용율 차이	29	1.0	12.9	6.07	3.54
	고학력자 고용율 차이	24	1.0	13.0	7.81	3.48
	건강한 성인 비율 차이	26	0.2	34.2	8.54	8.73
	선거참여율 차이	26	1.1	64.7	18.61	12.94
	소수자에 대한 비관용	31	15.6	65.0	63.17	15.54
	경제노동 차원의 격차 총합	24	-5.7	5.3	0.37	3.46
	사회적 차원의 격차 총합	26	-3.2	3.6	0.01	1.73
	격차의 총합	23	-6.0	5.9	0.22	3.98
절대적 기준의 통합	이민자 중위소득	27	9700.0	28700.0	18710.76	4694.23
	이민가구 빈곤율	27	1.5	31.2	17.71	6.81
	이민가구 자가 보유율	28	19.8	89.2	50.84	15.30
	이민자 고용율	29	47.9	75.9	63.92	6.53
	고학력 이민자 고용율	25	69.1	87.0	79.14	4.85
	건강한 성인 이민자 비율	26	22.5	89.6	68.33	17.18
	소수자에 대한 관용	31	35.0	84.4	63.17	15.54
	이민자 선거참여율	26	23.6	85.5	63.17	13.11
	경제노동 차원의 복지 총합	24	-4.9	5.6	0.04	2.91
	사회적 복지의 총합	26	-3.6	2.5	-0.01	1.73
복지의 총합	23	-5.4	5.2	0.02	2.83	
문화적 분화	31	0.025	0.72	0.29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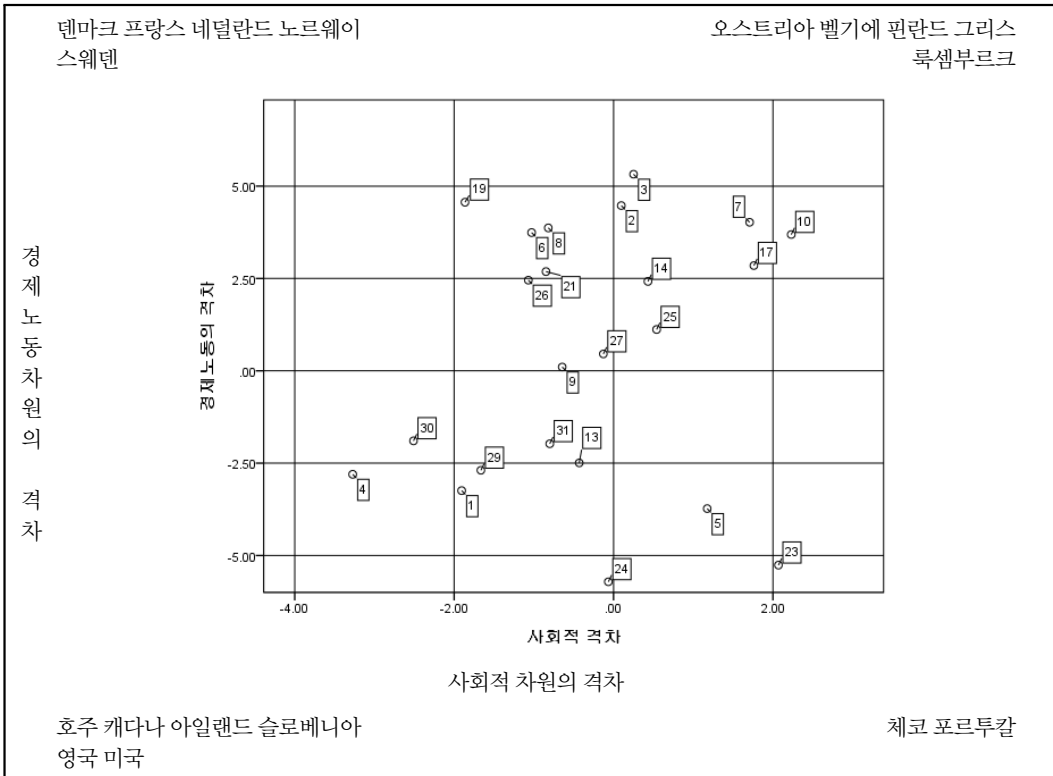
이민자가구의 중위소득은 평균 18710.76 달러에 달했으며, 이민자가구의 빈곤율은 평균 17.71%로 조사되었다. 이민자 가구중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평균 50.84%로 나타났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이민자의 고용율은 평균 63.92%,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이민자의 고용율은 평균 79.14%로 나타났다. 성인 이민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평균 66.33%, 투표권을 지닌 이민자의 선거 참여율은 63.17%를 보였다.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한다는 비율은 63.17%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경제적 복지는 평균 0.04(z값), 사회

적 복지는 평균 -0.01(z값), 복지의 총합은 평균 0.02(z값)로 분석되었다.

OECD 국가의 문화적 분화는 평균 0.287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로부터 무작위로 두 사람을 선택했을 경우 두 사람이 민족적 배경이 상이할 가능성이 약 29%임을 의미한다. 문화적 분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로 0.72,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0.025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분화도는 0.045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결과

[표 4] 상대적 기준의 이민자 사회통합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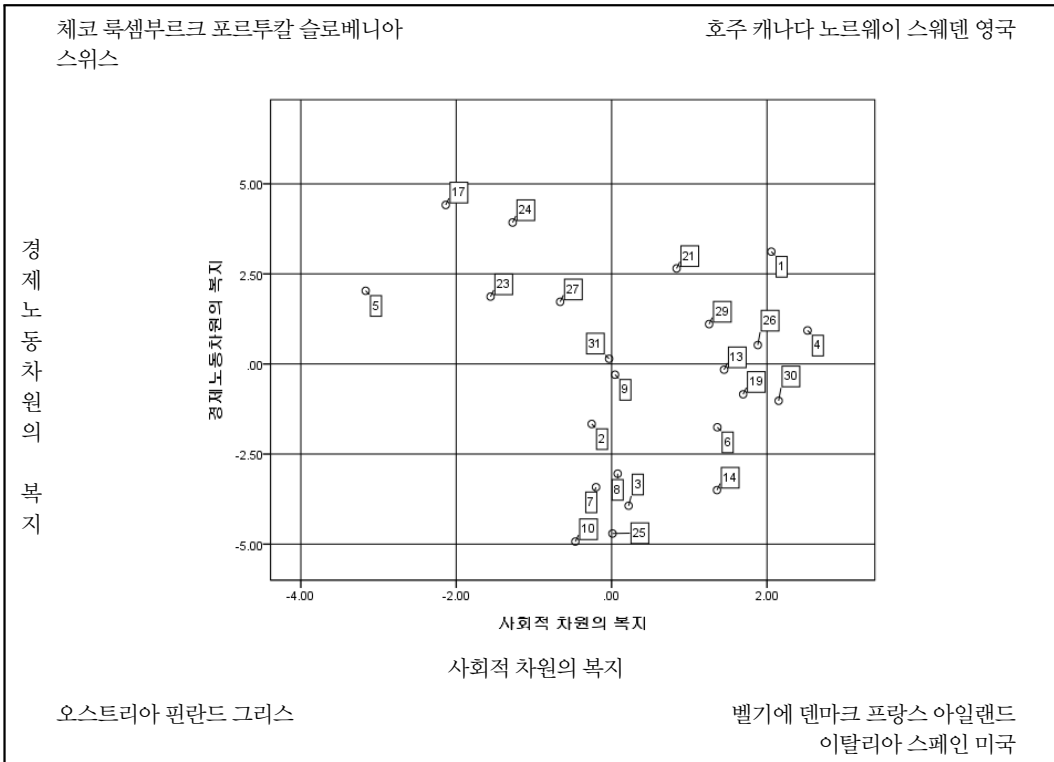


4) 1 호주,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캐나다, 5 체코, 6 덴마크, 7 핀란드, 8 프랑스, 9 독일, 10 그리스, 11 헝가리, 12 아이슬란드, 13 아일랜드, 14 이탈리아, 15 일본, 16 한국, 17 룩셈부르크, 18 멕시코, 19 네덜란드, 20 뉴질랜드, 21 노르웨이, 22 폴란드, 23 포르투갈, 24 슬로베니아, 25 스페인, 26 스웨덴, 27 스위스, 28 터키, 29 영국, 30 미국, 31 OECD 평균

경제노동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격차가 모두 낮아 상대적 기준에서 높은 사회통합을 보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모두 상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편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경제노동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격차가 모두 높은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중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는 적극적 이민국 레짐에 가까운 국가들이다.

경제노동의 격차는 낮고 사회적 격차는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로 북유럽에 위치한 적극적 모집국 레짐의 국가가 해당되었다. 체코와 포르투갈은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경제노동의 격차는 작은 반면 사회적 격차는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표 5] 절대적 기준의 이민자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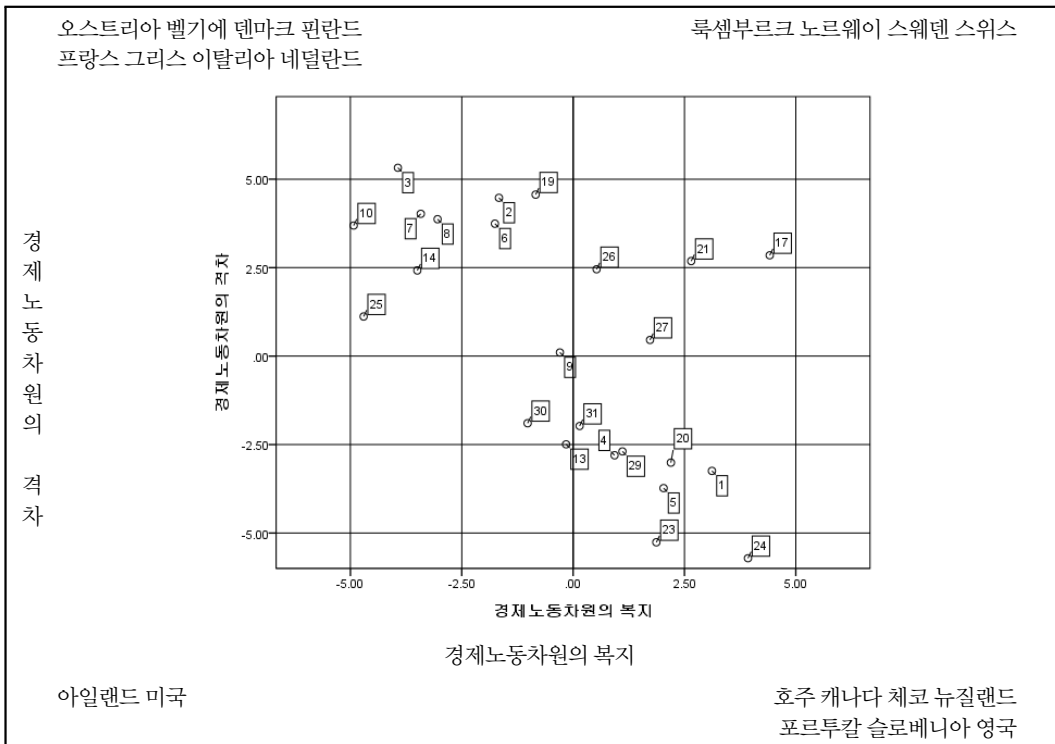


이민자의 경제노동의 복지수준과 사회적 차원의 복지수준이 모두 높아 절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호주,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한편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는 경제노동의 복지수준, 사회적 차원의 복지수준이 모두 낮아 절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체코,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경제노동의 복지는 높은 반면 사회적 차원의 복지는 낮았다. 룩셈부르크는 이민자의 중위소득이 28000달러로 매우 높고, 체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이민자의 자가보유이 비교적 높은 점이 경제노동의 복지수준을 높인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차원의 복지는 높고 경제노동의 복지는 낮은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덴마크와 이탈리아로 나타났다. 같은 분면에 속하지만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은 경제노동의 복지는 매우 낮고 사회적 차원의 복지는 평균에 가까웠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경제노동의 복지는 평균에 가깝고 사회적 차원의 복지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경제노동 차원의 이민자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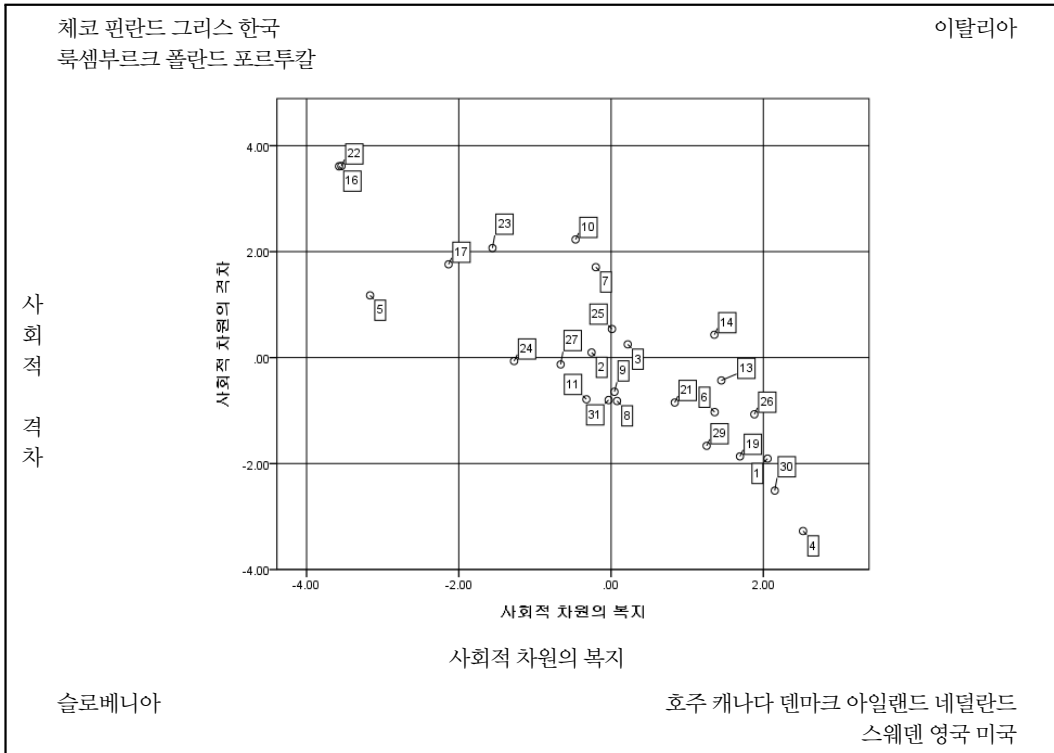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에 경제노동의 격차는 낮고 이민자의 경제노동 복지의 수준은 높아 경제노동 차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도가 높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체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국가가 이 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통적 이민국 레짐의 국가가 이민자의 경제노동 차원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특히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경제노동의 격차가 매우 낮았으며 이는 선주민의 경제노동의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에 경제노동의 격차는 높은 반면 이민자의 경제노동의 복지는 낮아 경제노동 차원의 사회통합이 취약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이민국 레짐이 혼합되어 있으며, 국가들 사이에 명확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단, 전통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해 온 프랑스와 2000년 이후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을 폐기하고 동화주의로 선회한 네덜란드가 경제노동 차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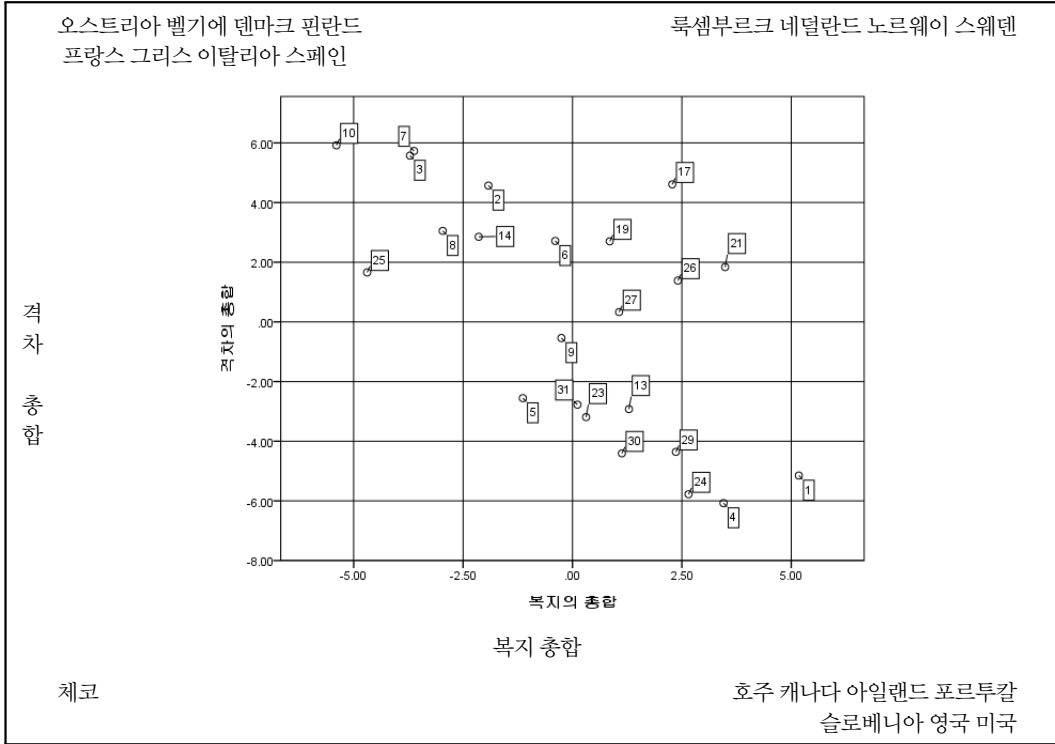
한편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에 경제노동의 격차는 낮고 이민자의 경제노동의 복지 또한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와 미국이, 경제노동의 격차가 높고 경제노동의 복지 또한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가 해당되었다. 노르웨이, 스웨덴은 강한 복지제도로 대표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로(Kautto, 2001) 이들 국가의 복지체계가 이민자의 높은 수준의 경제노동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표 7] 사회적 차원의 이민자 사회통합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에 사회적 차원의 격차는 낮고 이민자의 사회적 복지 수준은 높은 이상적 유형의 국가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통적 이민국의 대부분이 이상적인 유형에 해당됨에 따라 전통적 이민국은 경제노동 차원의 사회통합에 이어 사회적 차원의 사회통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코, 핀란드, 그리스, 한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은 사회적 격차는 높고 사회적 복지의 수준은 낮은 취약한 유형에 속했다. 이들 국가는 이민레짐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나타나며 특별한 공통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단 다른 유형에 속한 국가들에 비해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표 8] 전체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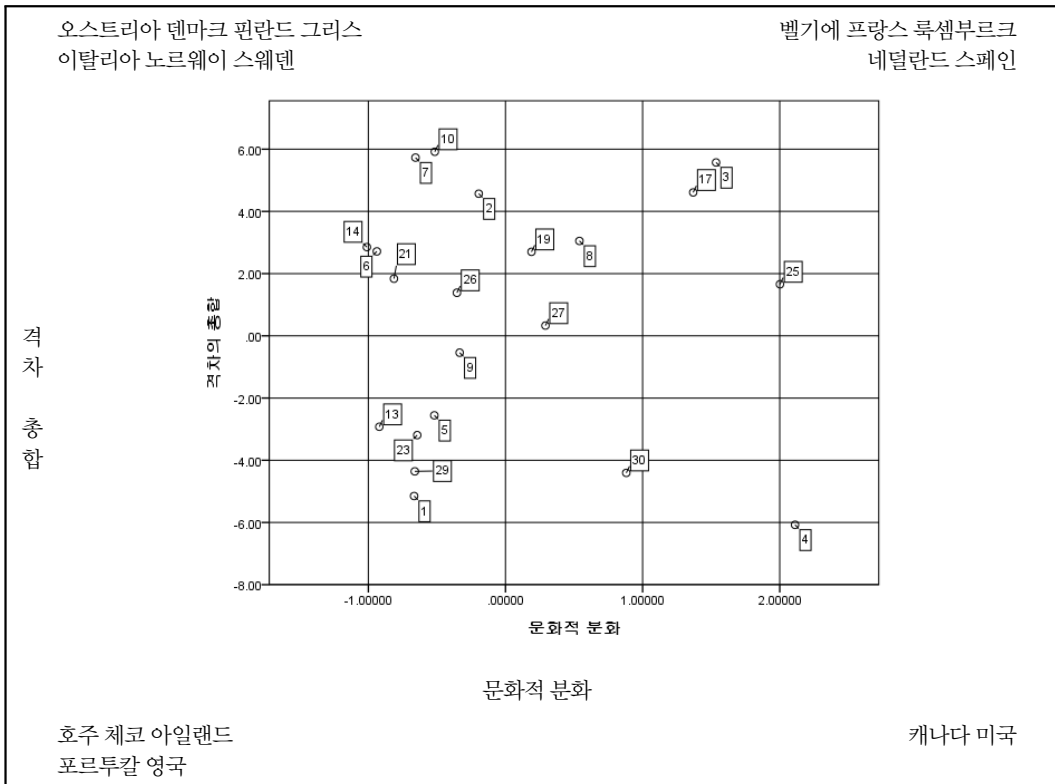


상대적 기준(경제노동 및 사회적 격차의 총합)과 절대적 기준(경제노동 및 사회적 차원의 복지총합)을 모두 고려해 각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이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이 모두 높아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이 이민자 통합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취약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서유럽의 적극적 이민국과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의 적극적 이민국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신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동일한 신이민국 레짐에 속함에도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는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보인 반면 남유럽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낮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보였다. 이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정책은 물론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격차의 총합이 높고 복지 수준 또한 높은 유형의 국가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일부 북유럽의 적극적 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와 룩셈부르크 등 기타 레짐의 국가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체코는 격차의 총합이 낮고 복지 수준 또한 낮은 유형에 속했다.

[표 9] 문화적 분화에 따른 상대적 기준의 이민자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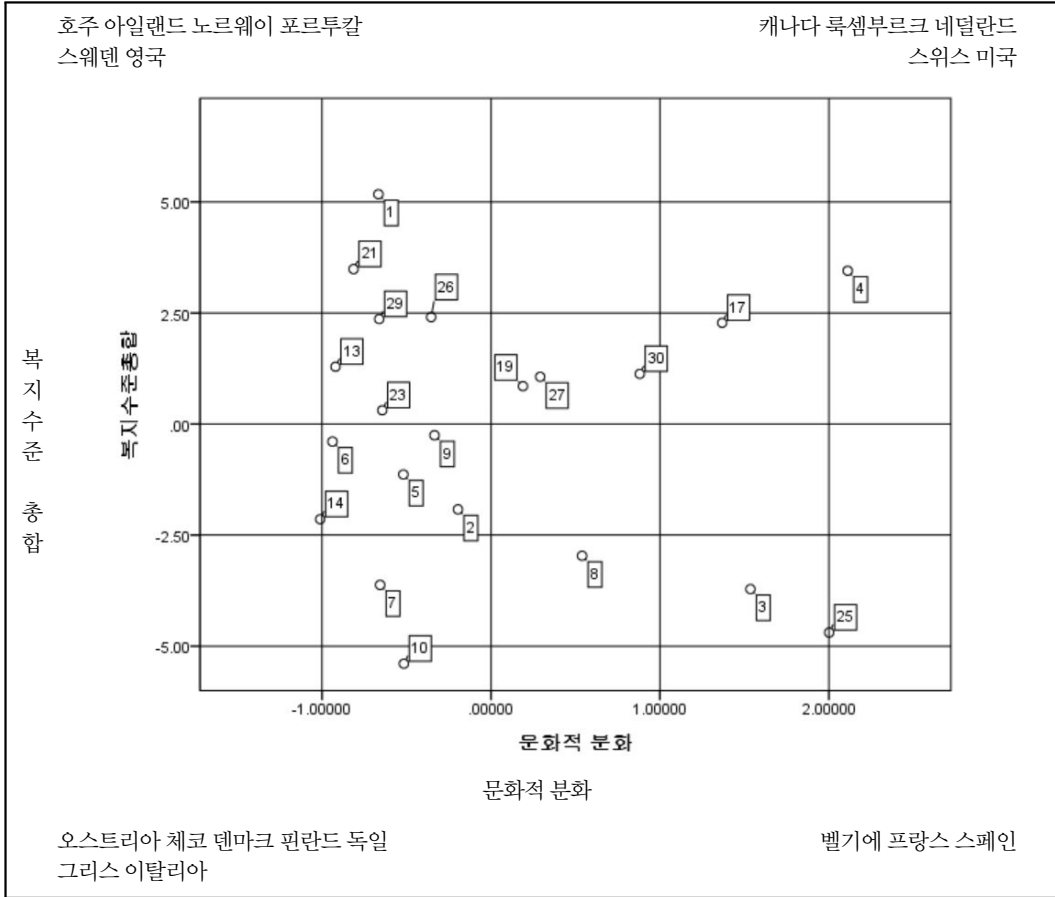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에 경제노동 및 사회적 차원의 격차를 각국의 문화적 분화의 수준을 고려해 살펴보면, 호주,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은 문화적 분화의 정도가 낮은 국가 중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격차가 낮아 상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문화적 분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상대적 기준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에 속했다.

문화적 분화의 수준은 낮고 격차의 총합은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이 속했으며, 문화적 분화의 수준이 높고 격차의 총합 또한 높은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으로 나타났다.

[표 10] 문화적 분화에 따른 절대적 기준의 이민자 사회통합



문화적 분화의 수준이 낮은 국가 중 이민자 복지의 총합 즉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분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 중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적 분화의 수준이 낮고 복지의 수준 또한 낮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문화적 분화의 수준이 높고 복지의 수준 또한 낮은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은 문화적 분화가 낮은 높은 관계없이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에 속했다. 그 외에 이민국 레짐과 각 유형 사이에 주목할 만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유럽의 복지국가 레짐에 속하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문화적 분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민자의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복지국가 레짐에 속하는 국가는 이민자의 복지수준에서 스웨덴은 높은 반면, 덴마크는 낮게 나타나는 등 의미 있는 유형을 보이지 않았다.

5. 결론 및 논의

이민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하나는 이민자의 성공적 사회통합이다. 이 연구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고찰한 선행연구가 비교적 문화적 분화도가 높은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질적분석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설명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사이의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국가들 사이의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이민자의 복지수준만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이민자와 선주민 사이의 격차를 통해 본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복지 수준이라는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경제노동 차원에서 이민자가 높은 사회통합을 보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체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서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타 이민국 레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Bauer, Lofstrom, Zimmermann(2000)의 주장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서 경제노동 차원의 사회통합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통적 이민국은 경제노동 차원의 사회통합에 이어 사회적 차원의 사회통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이 이민자 통합에서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이민국 레짐에 속함에도 아일랜드

와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는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보인 반면 남유럽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신이민국 레짐의 국가는 낮은 수준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보였다. 이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정책은 물론 각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주는 모든 분석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높은 유형에 속해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나타났다. 호주는 이민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속하는 국가로 국가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이민을 특징으로 한다. 호주는 인도주의적 이민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이민인구의 구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원의 통합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민인구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통합은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이민국 레짐은 자국민에 의한 역이민이 이민자의 다수를 이루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 교육받은 후 외국에서 머물다 역이민한 아일랜드 이민자는 자국민 보다 임금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프리미엄은 외국에 머문 기간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위의 해석을 뒷받침 한다(Barrett & O'Connell, 1999).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적극적 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는 이민자 사회통합에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노동시장 욕구와 이민자의 인적자본에 기초한 선택적 이민정책을 강조하는 적극적 이민국의 전략이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문화적 분화도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은 문화적 분화가 낮은 높은 관계없이 절대적 기준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이 높았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에 속하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문화적 분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절대적 기준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이 낮았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는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문화적 분화도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 정책, 이민자 적응지원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들 결과는 민족적 다양성의 증가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물론 전체사회의 통합을 위협할 것이라는 정서적 저항감을 냉소하게 한다. 사회통합과 문화적 분화도 사이의 연계가 부정됨에 따라, 이민자 억제 또는 단

문화로의 회귀가 사회통합을 빌미로 우리사회가 지켜내야 할 보루가 아니었음을 증거한다. 사회통합은 이민 또는 어떤 이유로든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힘든 모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 강순전(2004). 사회적 통합의 두 변증법적 모델(1): 헤겔과 아도르노의 주체-객체, 보편-특수의 변증법. 시대와 철학. 15(1), 240-263.
- 강주현(2011). 이민 이슈에 대한 정당의 전략적 대응과 이민정책의 변화: 덴마크와 스웨덴의 사례 비교 분석. 사회과학논집. 42(2), 25-50.
- 고상두(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264.
-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법제처(2013).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령.
- 법제처(2013). 출입국 관리법 법령.
- 설동훈, 이병하(2012). 노르웨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민족연구. 50, 163-181.
- 온대원(2010).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EU연구. 26, 239-267.
- 이규영, 김경미(2010). 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민자 참정권. 국제정치논총. 50(1), 445-468.
- 이규용(2014).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7-31.
- 이성순(2011).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179-208.
- 이혜경(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104-137.
- 이현아(2013).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10, 151-178.
- 장진숙(2010).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1(3), 97-128.
- 정무권(199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치경제: 한국에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7(3), 121-157.
- 최경수(2010).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 연구. 61(3), 153-194.
- 최동주(2009). 영국의 이민 관련 제도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2(1), 93-190.
- Barrett, A., & O'Connell, J. (1990). *Is there a wage premium for returning irish migrants?*. mineo, ESRI Ireland.
- Bauer, K., Lofstrom, M., & Zimmermann, F. (2000). Immigration policy, assimilation of immigrants and natives' sentiments towards immigrants: Evidence from 12 OECD-countries.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7, 11-35.
- Bell, D. (1997). The performance of immigrants in the United Kingdom: Evidence from the GHS. Economic Journal. 107, 333-344.
- Chiswick, R. (1980). The earnings of white and coloured male immigrants in Britain. Economica. 47.

81-87.

- Edin, A., LaLonde, R. & Aslund, O. (2000). Emigration of immigrants and measures of immigrant assimilation: Evidence from Sweden. Paper presented at the Swedish Economic Council's conference on: The Assimilation of Immigrants in the Labour Market, Stockholm, March 13, 2000.
- Ekberg, J. (1994). Economic progress of immigrants in Sweden from 1970 to 1990: A longitudinal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 148-157.
- Green, G. & Green, A. (1995). Canadian immigration policy: The effectiveness of the point system and other instrumen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8, 1006-1041.
- Hatton, J. & Wheatley Price, S. (1999). Migration, migrants and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IZA Discussion Paper, 81, IZA, Bonn.
- Hayfron, E. (1998). The performance of immigrants in the norwegian labor marke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 293-303.
- Kahanec, M., Zaiceva, A. & Zimmermann, F. (2010). Lessons from migration after EU enlargement. In *EU Labor Markets after post-enlargement Migration*, Berlin: Springer Verlag,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3-46.
- Kautto, M.(ed.). (2001). *Nordic welfare states in the European context*. London: Routledge.
- Keith, & Michael. (2007). Local governance and the new vocabulary of cohesion and integration: British experience and contemporary Korea. 국가인권위원회/주한영국대사관 주최 국제 세미나. 과주, 12월 26일.
- Mangset P., Kangas, A., Skot-Hansen, D. & vestheim, G. (2008). Editors' introduction nordic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4(1), 1-5.
- Marger, N. (1997).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Patsiurko, N, Campbell, L. & Hall, A. (2012). Measuring cultural diversity: Ethnic, linguistic and religious fractionalization in the OECD. *Ethnic and Racial Studies*, 35(2), 195-217.
- Shields, A. & Wheatley Price, S. (1998) The earnings of male immigrants in England: Evidence from the quarterly LFS. *Applied Economics*, 30, 1157-1168.
- SOPEMI. (1999).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Paris: OECD.
- Venturini, A. & Villosio, C. (2000) Are immigrants assimilation in the italian labour market?. *CHILD Working Paper*, 11(2000).
- Wadensjö, E. (2000). Immigration, the labour market, and public finances in Denmark.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7, 59-83.
- Wright, E. & Maxim, S. (1993)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 quality: Empirical evidence from Canad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6, 337-357.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Based on Immigration Regime

Choi, Hyeji*

This study was initiated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logic regarding case selection and a perspective for case analysis has never been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despite its significance. Given the idea, this study investigated levels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which were operationalized as 1) differences in general conditions of economic, labor, social, and political life between native born and foreign born and 2) level of quality of economic, labor, social life for immigrant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ary data set which was a combination of several secondary data sets. Results showed that the countries that belong to traditional immigration regime including Australia, Canada, and US showed higher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at various sub categories of integration. Countries that belong to new immigration regime such as Ireland revealed relatively high levels of immigrant integr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ied that integration of immigrants needs to be analyzed with consideration on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policy of each country along with immigration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of each country.

Key Words: immigration policy,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cultural diversity, comparative study

◆ 2017. 4. 30. 접수 / 2017. 6. 15. 1차수정 / 2017. 6. 20. 게재확정

*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hjchoi@swu.ac.kr)